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실차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9월 2일(충청북도지사)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9월 3일
- 다. 상정일자 : 2002년 9월 10일(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 
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동 기금은 대여제도 시행이후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향(3%)됨에도 기금의 대여이율이 높아(5%) 이로 인한 희망자가 없고 기금의 운영이 잘 이루어 지질 않아 동 조례안의 목적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바, 이를 현실적인 금리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
- 생활이 어려운 자와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에게 사업자금(전세점포 등)을 원활히 대여하여 자활을 돕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자활공동체 대여자금 이자 및 사업자금 이차보전 범위를 당초 연 5%에서 연3%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
- 기타사항으로는 조문내용 중 일부를 자구수정(범위내를 범위안으로)하는 것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먼저 동조례 제8조1항과 제9조 내용중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안에서”로 자구 수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용어순화 차원에서 검토한바 타당하며

- 두 번째 동조례 제8조 제3항의 내용중 이자율 “연5%”를 “연3%”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시중금리 등과 생활이 어려운자, 자활공동체 등의 자활능력 제고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인하조정으로 사료됨
- 그러나 동조례 제9조제1항의 이차보전 범위를 5%에서 3%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은 이차보전 액수를 오히려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기금운용 취지 및 동조례의 이차보전 조항 설정취지와 상치되므로 5% 이차보전이 되도록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
- 금번 제안된 동조례 개정안 검토를 위해 수집된 기초생활보장기금 현황, 동기금 운용 현황, 동기금의 용도, 타시군의 조례개정 현황, 동조례 개정추진상황, 동조례 전문 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람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# 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## 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- 관련 검토보고서